

아리아리! 정선
the mecca of arirang, jeongseon

정 선 군

군보는 공문서로의 효력을 갖는다

군 보

<http://www.jeongseon.go.kr/>

제342호 2014. 12. 17. (수)

【고 시】

- 정선군 고시 제2014 - 107호 정선 군관리계획(화암취락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고시 1
- 정선군 고시 제2014 - 108호 정선 군관리계획(시설:도로)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고시 14

【공 고】

- 정선군 공고 제2014 - 916호 정선군 아동복지교사 (기본분야, 특화분야) 채용 공고 16

□ 발행 : 정선군청 기획감사실 (전화:560-2227, FAX:560-2592)

고 시

정선군 고시 제2014 - 107호

정선 군관리계획(화암취락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고시

- 1. 강원도고시 제1994-107(1994.6.17)호로 결정된 정선군 화암면 화암리 393-1번지 일원 정선 군관리계획(화암취락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사항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9조, 제30조에 따라 군관리계획을 결정(변경)하고,
- 2.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제2항, 제9항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강원도 사무위임조례」 제2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승인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 합니다.
- 3. 관계도서는 정선군청 도시건축과에 비치하고 토지소유자 및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14년 12월 10일

정 선 군 수

가. 결정취지 : 화암취락지구 개발계획 수립 후 약 20년이 경과되면서 관련법규 변경과 개발 여건 등의 변화를 반영하고자, 현 법규에 맞도록 계획 내용을 변경 하고, 주민 및 관광객을 위한 주차장 등을 확충하여 지역경기활성화에 이바지 하고자 함.

나. 위 치 : 정선군 화암면 화암리 393-1번지 일원

다. 면 적 : 222,468㎡(변경없음)

라. 사업시행자 : 정선군수

마. 정선 군관리계획(화암취락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조서 :
별첨조서 참조

바. 정선 군관리계획(화암취락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도 :
실음생략(정선군청 도시건축과 비치)

정선 군관리계획(화암취락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조서

1. 용도지역 결정 조서(변경 없음)

구 분	면 적(㎡)			구성비(%)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합 계	222,468	-	222,468	100.0	
계 획관리지역	222,468	-	222,468	100.0	

2. 용도지구 결정 조서(변경 없음)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지구명	지구의 세 분	위 치	법적제한 용 내 용	면적 (㎡)	최 초 결정일	비 고
기정	①	화 암 취락지구	주거개발 진흥지구	화암리 일원	-	222,468	강고 제1994-107호 (1994.6.17)	

3.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조서(변경 없음)

구분	도면 표시 번호	구 역 명	구역의 세분	위 치	면 적(㎡)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기정	①	화 암 취락지구	주거형 지구단위계획구역	화암리 일원	222,468	-	222,468	

4.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군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가. 교통시설

1) 도로 결정(변경) 조서

구 분	규 모				기 능	연장 (m)	기 점	종 점	사 용 형태	주 요 경과지	최 초 결정일	비 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합 계	기정	27개 노선			-	5,438	-	-	-	-	-	-	
	변경	27개 노선			-	5,146	-	-	-	-	-	-	
소 계	기정	중로	2	1개 노선	-	1,100	-	-	-	-	-	-	
	변경	중로	2	1개 노선	-	1,100	-	-	-	-	-	-	
기정	중로	2	1	15	간선도로	1,100	1306천	1306천	일반 도로	-	강고 제1994-107호 (1994.6.17)		
변경	중로	2	1	15~19	간선도로	1,100	1306천	1306천	일반 도로	-	강고 제1994-107호 (1994.6.17)		
소 계	기정	중로	3	2개 노선	-	749	-	-	-	-	-	-	
	변경	중로	3	2개 노선	-	748	-	-	-	-	-	-	
기정	중로	3	1	12	보조 간선도로	733	1306천	중로2-1 (361-6도)	일반 도로	-	강고 제1994-107호 (1994.6.17)		
변경	중로	3	1	12	보조 간선도로	732	1306천	중로2-1 (361-6도)	일반 도로	-	강고 제1994-107호 (1994.6.17)		
기정	중로	3	2	12	집산도로	16	중로2-1 (1306천)	1306천	일반 도로	-	강고 제1994-107호 (1994.6.17)		

구 분	규 모				기 능	연장 (m)	기 점	종 점	사 용 형 태	주 요 경 과 지	최 초 결 정 일	비 고
	등 급	류 별	번호	폭 원 (m)								
소 계	기정	소로	1	2개 노선	-	397	-	-	-	-	-	-
	변경	소로	1	2개 노선	-	397	-	-	-	-	-	-
기정	소로	1	1	10	집산도로	182	중로3-1 (402-2도)	1306천	일반 도로	-	강고 제1994-107호 (1994.6.17)	
기정	소로	1	2	10	집산도로	215	중로2-1 (390-2도)	중로3-1 (393-5도)	일반 도로	-	강고 제1994-107호 (1994.6.17)	
소 계	기정	소로	2	6개 노선	-	805	-	-	-	-	-	-
	변경	소로	2	6개 노선	-	624	-	-	-	-	-	-
기정	소로	2	1	8	국지도로	95	소로1-1 (434-1답)	산212-3임	일반 도로	-	강고 제1994-107호 (1994.6.17)	
기정	소로	2	2	8	국지도로	97	중로3-1 (402-2도)	소로2-1 (432-1답)	일반 도로	-	강고 제1994-107호 (1994.6.17)	
기정	소로	2	3	8	국지도로	65	중로3-1 (398-1도)	소로3-8 (산212-4임)	일반 도로	-	강고 제1994-107호 (1994.6.17)	
기정	소로	2	4	8	국지도로	119	중로2-1 (425-1도)	중로3-1 (408전)	일반 도로	-	강고 제1994-107호 (1994.6.17)	
기정	소로	2	5	8	국지도로	28	중로3-1 (396-7도)	소로3-8 (산211-1임)	일반 도로	-	강고 제1994-107호 (1994.6.17)	
기정	소로	2	6	8	국지도로	401	중로2-1 (350-3도)	중로2-1 (391-1도)	일반 도로	-	강고 제1994-107호 (1994.6.17)	
변경	소로	2	6	8	국지도로	220	중로2-1 (350-3도)	소로1-2 (390-2도)	일반 도로	-	강고 제1994-107호 (1994.6.17)	
소 계	기정	소로	3	8개 노선	-	1,638	-	-	-	-	-	-
	변경	소로	3	8개 노선	-	1,534	-	-	-	-	-	-
기정	소로	3	1	6	국지도로	126	중로3-1 (409-15도)	소로2-6 (413답)	일반 도로	-	강고 제1994-107호 (1994.6.17)	
변경	소로	3	1	6	국지도로	155	중로3-1 (409-15도)	중로2-1 (413-6답)	일반 도로	-	강고 제1994-107호 (1994.6.17)	
기정	소로	3	2	6	국지도로	306	중로3-1 (402-3전)	소로1-2 (387-1답)	일반 도로	-	강고 제1994-107호 (1994.6.17)	
변경	소로	3	2	6	국지도로	196	중로3-1 (402-3전)	소로3-1 (411-2도)	일반 도로	-	강고 제1994-107호 (1994.6.17)	
기정	소로	3	3	6	국지도로	197	중로2-1 (350-5대)	소로1-2 (1110답)	일반 도로	-	강고 제1994-107호 (1994.6.17)	
변경	소로	3	3	6	국지도로	196	중로2-1 (350-5대)	소로1-2 (1110답)	일반 도로	-	강고 제1994-107호 (1994.6.17)	
기정	소로	3	4	6	국지도로	97	중로2-1 (1154-1도)	소로2-6 (382도)	일반 도로	-	강고 제1994-107호 (1994.6.17)	
변경	소로	3	4	6	국지도로	94	중로2-1 (1154-1도)	소로2-6 (382도)	일반 도로	-	강고 제1994-107호 (1994.6.17)	
기정	소로	3	5	6	국지도로	67	중로2-1 (1108-1도)	소로2-6 (391-3답)	일반 도로	-	강고 제1994-107호 (1994.6.17)	
변경	소로	3	5	6	국지도로	48	소로3-1 (413-4도)	391답	일반 도로	-	강고 제1994-107호 (1994.6.17)	
기정	소로	3	6	6	국지도로	151	소로2-6 (374-8대)	중로3-1 (356-14대)	일반 도로	-	강고 제1994-107호 (1994.6.17)	
기정	소로	3	7	6	국지도로	27	중로3-1 (396-3대)	소로3-8 (산211-1임)	일반 도로	-	강고 제1994-107호 (1994.6.17)	
기정	소로	3	8	6	국지도로	667	중로3-1 (373-1대)	소로1-1 (436-1전)	일반 도로	-	강고 제1994-107호 (1994.6.17)	

구 분	구 모				기 능	연장 (m)	기 점	종 점	사 용 태	주 요 경 과 지	최 초 결 정 일	비 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소 계	기정	소로	4	8개 노선	-	749	-	-	-	-	-	
	변경	소로	4	8개 노선	-	743	-	-	-	-	-	
기정	소로	4	1	4	국지도로	156	중로3-1 (349-3학)	소로3-6 (352-6전)	일반 도로	-	강고 제 1994-107호 (1994.6.17)	
기정	소로	4	2	4	국지도로	59	중로3-1 (374-1대)	소로3-6 (352-4중)	일반 도로	-	강고 제 1994-107호 (1994.6.17)	
기정	소로	4	3	4	국지도로	44	중로2-1 (352-23도)	소로3-6 (352-7도)	일반 도로	-	강고 제 1994-107호 (1994.6.17)	
변경	소로	4	3	4	국지도로	42	중로2-1 (352-7도)	소로3-6 (352-7도)	일반 도로	-	강고 제 1994-107호 (1994.6.17)	
기정	소로	4	4	4	국지도로	63	중로3-1 (372-5대)	소로3-8 (산211-1임)	일반 도로	-	강고 제 1994-107호 (1994.6.17)	
기정	소로	4	5	4	국지도로	196	중로2-1 (324-1도)	소로3-8 (324-16도)	일반 도로	-	강고 제 1994-107호 (1994.6.17)	
기정	소로	4	6	4	국지도로	126	중로3-1 (361-33대)	소로3-8 (산211-1임)	일반 도로	-	강고 제 1994-107호 (1994.6.17)	
기정	소로	4	7	4	국지도로	54	중로2-1 (356-4대)	중로3-1 (356-8차)	일반 도로	-	강고 제 1994-107호 (1994.6.17)	
변경	소로	4	7	4	국지도로	52	중로2-1 (375-2대)	중로3-1 (356-8차)	일반 도로	-	강고 제 1994-107호 (1994.6.17)	
기정	소로	4	8	4	국지도로	51	중로2-1 (355-1대)	소로3-6 (352-4중)	일반 도로	-	강고 제 1994-107호 (1994.6.17)	
변경	소로	4	8	4	국지도로	49	중로2-1 (352-28대)	소로3-6 (352-4중)	일반 도로	-	강고 제 1994-107호 (1994.6.17)	

☑ 도로 결정(변경) 사유서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경 내용	변경 사유
중로2-1	중로2-1	° 선형 변경 및 폭원 확폭 - B : 15m → 15m~19m	° 개설된 지방도424호선의 도로구역 반영 및 주차장 신설에 따른 가속차로 설치를 위한 선형 및 폭원 변경
중로3-1	중로3-1	° 노선 축소 - L : 733m → 732m(감 1m)	° 개설된 지방도424호선의 도로구역 반영에 따른 노선 축소
소로2-6	소로2-6	° 노선 축소 - L : 401m → 220m(감 181m)	° 주차장 신설에 따른 노선 축소
소로3-1	소로3-1	° 노선 연장 - L : 126m → 155m(증 29m)	° 현황도로를 반영한 노선 연장
소로3-2	소로3-2	° 노선 축소 - L : 306m → 196m(감 110m)	° 주차장 신설에 따른 노선 축소
소로3-3	소로3-3	° 노선 축소 - L : 197m → 196m(감 1m)	° 개설된 지방도424호선의 도로구역 반영에 따른 노선 축소
소로3-4	소로3-4	° 노선 축소 - L : 97m → 94m(감 3m)	° 개설된 지방도424호선의 도로구역 반영에 따른 노선 축소
소로3-5	소로3-5	° 위치 변경 및 노선 축소 - 시점 : 중로2-1 → 소로3-1 - 종점 : 소로2-6 → 391답 - L : 67m → 48m(감 19m)	° 주차장 신설에 따른 부출입구 조성을 위한 위치 변경 및 노선 축소
소로4-3	소로4-3	° 노선 축소 - L : 44m → 42m(감 2m)	° 개설된 지방도424호선의 도로구역 반영에 따른 노선 축소
소로4-7	소로4-7	° 노선 축소 - L : 54m → 52m(감 2m)	° 개설된 지방도424호선의 도로구역 반영에 따른 노선 축소
소로4-8	소로4-8	° 노선 축소 - L : 51m → 49m(감 2m)	° 개설된 지방도424호선의 도로구역 반영에 따른 노선 축소

2) 주차장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위 치	면 적(㎡)			최 초 결정 일	비 고
				기정	변경	변경 후		
신설	①	노외주차장	화암리 391-3번지 일원	-	증)7,075	7,075	금회	

☑ 주차장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변경 내 용	변경 사유
①	노외주차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차장 신설 - 위치 : 화암리 391-3번지 일원 - 면적 : 7,075㎡ 	<ul style="list-style-type: none"> 화암취락지구 내 부족한 주차공간 확보를 통한 지역 주민 및 관광객에게 주차 편의를 제공하고자 신설

3) 자동차정류장 결정 조서(변경 없음)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 치	면 적(㎡)			최 초 결정 일	비 고
					기정	변경	변경 후		
기정	①	자동차정류장	-	화암리 396-1대 일원	990	-	990	강고 제1994-107호 (1994.6.17)	

나. 공간시설

1) 공원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공원명	시설의 종류	위 치	면 적(㎡)			최 초 결정 일	비 고
					기정	변경	변경 후		
변경	①	공원	수변공원	화암리 1114답 일원	4,936	증)280	5,216	강고 제1994-107호 (1994.6.17)	

☑ 공원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 표시 번호	공원명	변경 내 용	변경 사유
①	공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원 면적 증가 - 면적 : 4,936㎡ → 5,216㎡ (증 280㎡) 	<ul style="list-style-type: none"> 중로2-1호선 선형 변경으로 인한 공원 면적 증가

다. 유통 및 공급시설

1) 전기공급설비 결정 조서(변경 없음)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위 치	면 적(㎡)			최 초 결정 일	비 고
				기정	변경	변경 후		
기정	①	전기공급설비	화암리 365-1대 일원	150	-	150	강고 제1994-107호 (1994.6.17)	집전실

라. 공공·문화체육시설

1) 공공청사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 치	면 적(㎡)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합 계	-	-	-	-	8,280	증)235	8,515	-	
기정	①	공공청사	소방서 분소	화암리 409-6답 일원	230	-	230	강고 제1994-107호 (1994.6.17)	
변경	②	공공청사	면사무소	화암리 393-1대 일원	5,250	증)235	5,485	강고 제1994-107호 (1994.6.17)	
기정	③	공공청사	우체국	화암리 376-5대 일원	430	-	430	강고 제1994-107호 (1994.6.17)	
기정	④	공공청사	보건지소	화암리 372-3대 일원	1,120	-	1,120	강고 제1994-107호 (1994.6.17)	
기정	⑤	공공청사	지구대	화암리 358-1대 일원	1,250	-	1,250	강고 제1994-107호 (1994.6.17)	

☑ 공공청사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변경 내용	변경 사유
②	공공청사	◦ 면사무소 면적 증가 - 면적 : 5,250㎡ → 5,485㎡ (증 235㎡)	◦ 현재 조성된 면사무소 부지를 반영한 면적 증가

2) 학교 결정 조서(변경 없음)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 치	면 적(㎡)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합 계	-	-	-	-	16,680	-	16,680	-	
기정	①	학 교	화동 중학교	화암리 386학 일원	7,860	-	7,860	강고 제1994-107호 (1994.6.17)	
기정	②	학 교	화동 초등학교	화암리 380학 일원	8,820	-	8,820	강고 제1994-107호 (1994.6.17)	

3) 문화시설 결정 조서(변경 없음)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 치	면 적(㎡)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①	문화시설	마을회관	화암리 352-2전 일원	540	-	540	강고 제1994-107호 (1994.6.17)	

마. 환경기초시설

1) 하수도 결정 조서(변경 없음)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위 치	면 적(㎡)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①	하수종말처리장	화암리 429-2답 일원	480	-	480	강고 제1994-107호 (1994.6.17)	

5.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구성에 관한 군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가. 가구의 규모와 구성에 관한 군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도면 번호	가구번호	기정면적(㎡)	가 구		증·감 (㎡)	비고
			위 치	변경면적(㎡)		
계		222,468	-	222,468	-	
A	주 거 용 지	76,326	화암리 426답 일원	69,734	감) 6,592	
B	상 업 용 지	15,417	화암리 430-1답 일원	15,091	감) 326	
C	공 업 용 지	13,353	화암리 436-1전 일원	13,353	-	
D	녹 지 용 지	40,808	화암리 1114답 일원	41,993	증) 1,185	
E	공공시설용지	76,564	화암리 393-1대 일원	82,297	증) 5,733	

나. 획지의 규모와 구성에 관한 군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도면번호			기정면적 (㎡)	획 지		증·감 (㎡)	비고
				위 치	변경면적 (㎡)		
합 계			222,468	-	222,468	-	
기정	변경	소 계	76,326	-	69,734	감) 6,592	
A-1	A-1	주거용지	5,900	화암리 426답 일원	5,900	-	
A-2	A-2	"	2,942	화암리 427-2답 일원	2,942	-	
A-3	A-3	"	6,381	화암리 419-1답 일원	6,989	증) 608	
A-4	A-4	"	4,890	화암리 418중 일원	4,890	-	
A-5	A-5	"	4,138	화암리 413답 일원	2,526	감) 1,612	
A-6	A-6	"	3,066	화암리 390답 일원	1,546	감) 1,520	
A-7	A-7	"	5,813	화암리 441답 일원	2,468	감) 3,345	
A-8	A-8	"	3,481	화암리 396대 일원	3,481	-	
A-9	A-9	"	5,782	화암리 383-2답 일원	5,400	감) 382	
A-10	A-10	"	4,456	화암리 389답 일원	4,456	-	
A-11	A-11	"	537	화암리 388-2창 일원	537	-	
A-12	A-12	"	717	화암리 376-1대 일원	717	-	
A-13	A-13	"	460	화암리 372-2대 일원	460	-	
A-14	A-14	"	2,340	화암리 371-1대 일원	2,340	-	
A-15	A-15	"	2,396	화암리 375-1대 일원	2,396	-	
A-16	A-16	"	1,978	화암리 369-2대 일원	1,978	-	
A-17	A-17	"	2,438	화암리 1158대 일원	2,356	감) 82	
A-18	A-18	"	4,207	화암리 381-4학 일원	4,118	감) 89	
A-19	A-19	"	299	화암리 352-29전 일원	299	-	
A-20	A-20	"	1,426	화암리 352-13대 일원	1,348	감) 78	
A-21	A-21	"	1,947	화암리 352-18대 일원	1,855	감) 92	
A-22	A-22	"	4,421	화암리 366대 일원	4,421	-	
A-23	A-23	"	1,239	화암리 398전 일원	1,239	-	
A-24	A-24	"	5,072	화암리 396-11전 일원	5,072	-	

도면번호			기정면적 (㎡)	획 지		증·감 (㎡)	비고
				위	변경면적 (㎡)		
기정	변경	소 계	15,417	-	15,091	감) 326	
B-1	B-1	상업용지	2,274	화암리 430-1답 일원	2,274	-	
B-2	B-2	"	1,224	화암리 432-4답 일원	1,224	-	
B-3	B-3	"	2,893	화암리 401-1답 일원	2,893	-	
B-4	B-4	"	1,165	화암리 374-10대 일원	1,165	-	
B-5	B-5	"	2,028	화암리 373-2대 일원	2,028	-	
B-6	B-6	"	1,691	화암리 356-13전 일원	1,585	감) 106	
B-7	B-7	"	158	화암리 356-8차 일원	158	-	
B-8	B-8	"	2,371	화암리 361-10대 일원	2,151	감) 220	
B-9	B-9	"	1,613	화암리 361-34대 일원	1,613	-	
기정	변경	소 계	13,353	-	13,353	-	
C-1	C-1	공업용지	5,112	화암리 436-1전 일원	5,112	-	
C-2	C-2	"	3,318	화암리 433답 일원	3,318	-	
C-3	C-3	"	4,110	화암리 432-3답 일원	4,110	-	
C-4	C-4	"	813	화암리 산212-4임 일원	813	-	
기정	변경	소 계	40,808	-	41,993	증) 1,185	
D-1	D-1	녹지 ①	9,794	화암리 435-1답 일원	9,794	-	
D-2	D-2	녹지 ②	1,818	화암리 1306천 일원	1,818	-	
D-3	D-3	녹지 ③	16,462	화암리 1306천 일원	17,367	증) 905	
D-4	D-4	녹지 ④	944	화암리 1306천 일원	944	-	
D-5	D-5	녹지 ⑤	6,854	화암리 325-4전 일원	6,854	-	
D-6	D-6	수변공원 ①	4,936	화암리 1114답 일원	5,216	증) 280	
기정	변경	소 계	76,564	-	82,297	증) 5,733	
E-1	E-1	공공청사 ①	230	화암리 409-6답 일원	230	-	소방서분소
E-2	E-2	공공청사 ②	5,250	화암리 393-1대 일원	5,485	증) 235	면사무소
E-3	E-3	공공청사 ③	430	화암리 376-5대 일원	430	-	우체국
E-4	E-4	공공청사 ④	1,120	화암리 372-3대 일원	1,120	-	보건지소
E-5	E-5	공공청사 ⑤	1,250	화암리 358-1대 일원	1,250	-	지구대
E-6	E-6	학교 ①	7,860	화암리 386학 일원	7,860	-	화동중학교
E-7	E-7	학교 ②	8,820	화암리 380학 일원	8,820	-	화동초등학교
E-8	E-8	문화시설 ①	540	화암리 352-2대 일원	540	-	마을회관
E-9	E-9	전기공급설비 ①	150	화암리 365-1대 일원	150	-	집전실
E-10	E-10	자동차정류장 ①	990	화암리 396-1대 일원	990	-	
E-11	E-11	하수종말처리장 ①	480	화암리 429-2답 일원	480	-	
E-12	E-12	도로	49,444	화암리 394-1도 일원	47,867	감) 1,577	
-	E-13	주차장 ①	-	화암리 391-3답 일원	7,075	증) 7,075	

6. 건축물에 대한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배치·형태·색채·건축선에 관한 군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번호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기정	A-1 ~ A-24	화암리 426답 일원 (주거용지)	용 도	◦ 정선군 도시계획조례 별표 4 제2종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 할 수 있는 건축물
			건폐율	◦ 단독주택60%, 연립주택40%, 공동주택30%
			용적률	◦ 단독주택100%, 연립주택150%, 공동주택200%
			높 이	◦ 단독주택, 상가, 기타건축물 : 5층 이하 ◦ 공동주택 : 10층 이하
변경	A-1 ~ A-24	화암리 426답 일원 (주거용지)	용 도	◦ 단독주택 ◦ 공동주택
				◦ 제1종근린생활시설 ◦ 제2종근린생활시설(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 제외) ◦ 문화 및 집회시설(관람장 제외) ◦ 종교시설 ◦ 판매시설 중 소매시장, 상점(당해용도 2천㎡ 미만인 것) ◦ 의료시설(격리병원 제외) ◦ 교육연구시설 ◦ 노유자시설 ◦ 운동시설 ◦ 업무시설 중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 미만인 것 ◦ 창고시설(농업, 임업, 축산업에 한함) ◦ 자동차 관련시설 중 주차장 및 세차장
			불허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 60% 이하
			용적률	◦ 200% 이하
			높 이	◦ 단독주택, 상가, 기타건축물 : 5층 이하 ◦ 공동주택 : 10층 이하
			배 치 (권장)	◦ 건축물의 전면은 접한 전면가로와 일치 ◦ 가각에 접한 대지에서는 접한 모든 도로의 전면방향과 일치
			형 태 (권장)	◦ 외벽은 주변경관과 조화된 질이 높은 것을 사용토록하며 전면과 측면의 구별 없이 모든 면의 마감수준을 동일하게 처리하거나, 유사하게 처리하도록 권장
			색 채 (권장)	◦ 외벽 및 담장의 색채는 서로 유사한 계통의 색으로 권장
			건축선	-

구분	도면번호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기정	B-1 ~ B-9	화암리 430-1답 일원 (상업용지)	용 도	◦ 정선군 도시계획조례 별표 8 일반상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건폐율	◦ 60% 이하	
			용적률	◦ 200% 이하	
			높 이	◦ 단독주택, 상가, 기타건축물 : 5층 이하 ◦ 공동주택 : 10층 이하	
변경	B-1 ~ B-9	화암리 430-1답 일원 (상업용지)	용 도	허용용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독주택 ◦ 제1종근린생활시설 ◦ 문화 및 집회시설 ◦ 판매시설 ◦ 의료시설(격리병원 제외) ◦ 노유자시설 ◦ 운동시설 ◦ 숙박시설 ◦ 창고시설 ◦ 자동차 관련시설(폐차장 제외) ◦ 관광휴게시설
				불허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용 도	공동주택(아파트 제외)	◦ 공동주택(아파트 제외)
				제2종근린생활시설	◦ 제2종근린생활시설
			배 치 (권장)	종교시설	◦ 종교시설
				운수시설	◦ 운수시설
			형 태 (권장)	교육연구시설	◦ 교육연구시설
				수련시설	◦ 수련시설
			색 채 (권장)	업무시설	◦ 업무시설
				장	
			건축선	-	
			높 이	◦ 5층 이하	
			배 치 (권장)	◦ 건축물의 전면은 접한 전면가로와 일치 ◦ 각각에 접한 대지에서는 접한 모든 도로의 전면방향과 일치	
형 태 (권장)	◦ 외벽은 주변경관과 조화된 질이 높은 것을 사용토록하며 전면과 측면의 구별 없이 모든 면의 마감수준을 동일하게 처리하거나, 유사하게 처리하도록 권장				
색 채 (권장)	◦ 외벽 및 담장의 색채는 서로 유사한 계통의 색으로 권장				

구분	도면번호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기정	C-1 ~ C-4	화암리 436-1전 일원 (공업용지)	용 도	◦ 정선군 도시계획조례 별표12 일반공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단 공업용지에서 아파트형 공장 건축 시 용적률150%)	
			건폐율	◦ 60% 이하	
			용적률	◦ 100% 이하	
			높 이	◦ 단독주택, 상가, 기타건축물 : 5층 이하 ◦ 공동주택 : 10층 이하	
변경	C-1 ~ C-4	화암리 436-1전 일원 (공업용지)	용 도	허용용도	◦ 단독주택 ◦ 공동주택(기숙사에 한함) ◦ 제1종근린생활시설 ◦ 제2종근린생활시설 ◦ 문화 및 집회시설 ◦ 운수시설 ◦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 창고시설 ◦ 자동차 관련시설 ◦ 공장(첨단, 농업, 임업, 축산업에 한함)
				불허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 60% 이하	
			용적률	◦ 100% 이하	
			높 이	◦ 5층 이하	
			배 치 (권장)	◦ 건축물의 전면은 접한 전면가로와 일치 ◦ 가각에 접한 대지에서는 접한 모든 도로의 전면방향과 일치 ◦ 건축한계선이 적용되지 않는 대지내에 입지하는 건축물은 인접 건축물과 건축선 일치	
			형 태 (권장)	◦ 외벽 : 주변경관과 조화된 질이 높은 것을 사용토록하며 전면과 측면의 구별 없이 모든 면의 마감수준을 동일하게 처리하거나, 유사하게 처리하도록 권장 ◦ 지붕 : 경사지붕(경사지붕 구배 : 3/10이상, 5/10이하 권장)	
			색 채 (권장)	◦ 외벽의 색채는 3차색 이상의 혼합색 권장 ◦ 외벽 및 담장의 색채는 서로 유사한 계통의 색으로 권장	
			건축선	-	

구 분	도면 번호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기정	D-1 ~ D-5	화암리 1306천 일원 (녹지용지)	용 도	◦ 단독주택, 제1종근린생활시설, 의료시설,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 운동시설, 창고시설,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공공용시설, 관광휴게시설	
			건폐율	◦ 40% 이하	
			용적률	◦ 100% 이하	
			높 이	◦ 단독주택, 상가, 기타건축물 : 5층 이하	
변경	D-5	화암리 325-1대 일원 (녹지용지)	용 도	허용 용도	◦ 단독주택 ◦ 창고시설(농업, 임업, 축산업에 한함)
				불허 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 40% 이하	
			용적률	◦ 100% 이하	
			높 이	◦ 2층 이하	
			배 치 (권장)	◦ 건축물의 전면은 접한 전면가로와 방향과 일치 ◦ 가각에 접한 대지에서는 접한 모든 도로의 전면방향과 일치 ◦ 건축한계선이 적용되지 않는 대지내에 입지하는 건축물은 인접 건축물과 건축선 일치	
			형 태 (권장)	◦ 외벽 : 주변경관과 조화된 질이 높은 것을 사용토록하며 전면과 측면의 구별 없이 모든 면의 마감수준을 동일하게 처리하거나, 유사하게 처리하도록 권장 ◦ 지붕 : 경사지붕(경사지붕 구배 : 3/10이상, 5/10이하 권장)	
			색 채 (권장)	◦ 외벽의 색채는 3차색 이상의 혼합색 권장 ◦ 외벽 및 담장의 색채는 서로 유사한 계통의 색으로 권장	
			건축선	-	

정선군 고시 제2014 - 108호

정선 군관리계획(시설:도로)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고시

1. 건설교통부 고시 제1978-138호(1978.6.8.), 정선군고시 제2009-83(2009.6.5.)호로 결정된 정선군 사북읍 사북리 72-5번지 일원 정선 군관리계획(군계획시설:도로) 결정(변경) 사항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강원도 사무위임조례」 제2조에 따라 군관리계획을 결정(변경)하고,
2. 「토지이용 규제기본법」 제8조제2항, 제9항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강원도 사무위임조례」 제2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승인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3. 관계도서는 정선군청 도시건축과에 비치하고 토지소유자 및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14년 12월 10일

정 선 군 수

가. 결정취지 : 낙후된 사북지구 주거환경 개선사업의 일환인 중로2-10호선의 노후된 사북운탄교 신설계획, 급경사지 구간 및 하천구역(지장천)등 지형여건을 고려한 실시설계 선형을 반영하여 군계획시설(도로) 사업을 시행하고자 함.

나. 위 치 : 정선군 사북읍 사북리 산153-24번지 일원

다. 사업시행자 : 정선군수

라. 정선 군관리계획(군계획시설:도로)결정(변경) 승인조서 : 별첨조서 참조

마. 정선 군관리계획(군계획시설:도로)결정(변경) 승인도 : 실음생략

(정선군청 도시건축과 비치)

정선 군관리계획(시설:도로)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조서

1. 군계획시설(교통시설)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조서

가. 교통시설

1) 도로 결정(변경)조서

구분	규 모				기능	연장 (m)	기 점	종 점	사용 형태	주 요 경과지	최 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중로	2	10	15	집산 도로	945	중로 2-2 사북리 72-5임	사북리 산153-24임	일반 도로	-	정선고83호 (09.6.5)	
변경	중로	2	10	15	집산 도로	966	중로 2-2 사북리 72-5임	사북리 산153-24임	일반 도로	-	-	
기정	중로	3	9	12	국지 도로	118	중로 2-10 사북리 300-13대	소로 2-1 사북리 300-13대	일반 도로	선명2차 아파트	건고138호 (78.6.8)	
변경	중로	3	9	12	국지 도로	109	중로 2-10 사북리 300-13대	소로 2-1 사북리 300-13대	일반 도로	선명2차 아파트	-	

□ 도로 결정(변경) 사유서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경내용	변 경 사 유
중로2-10	중로2-10	◦일부구간 노선변경 - L=945m→966m (증) 21m	◦ 낙후된 사북지구 주거환경 개선사업 추진으로 중로2-10호선의 노후된 사북운탄교의 실시설계 선형반영, 급경사지 구간 및 하천구역(지장천)등 지형여건을 고려하여 노선변경하여 군계획시설(도로) 사업을 시행하고자 함.
중로3-9	중로3-9	◦노선축소 - L=118m→109m (감) 9m	◦ 중로2-10호선 노선변경에 따라 시점부 노선축소

공 고

정선군 공고 제2014 - 916호

정선군 아동복지교사(기본분야, 특화분야) 채용 공고

2015년 정선군 아동복지교사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아동복지교사(특화분야)를 채용하고자 다음과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

2014. 12. 16.

정 선 군 수

1. 채용개요 및 분야

- 채용기간 : 2015. 1. 1 ~ 12. 31. (12개월)
- 채용인원 : 1명 (지역사회복지사 1명)

구분	분야	인원	활동내용
특화분야	지역사회복지사	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동복지교사 노무행정 관리 - 지역사회 돌봄 필요아동 발굴 및 적합한 지역돌봄기관으로의 연계 - 방과후 돌봄서비스 연계체제 구축운영에 요구되는 실무 지원 - 드림스타트와 지역아동센터 연계 업무 지원

2. 응시자격 및 기준

항 목		채용기준 및 우대사항
기본 자 격	공 통	1) 만 19세 이상으로, 정선군 거주자(주민등록등본기준)우대 2) 2015년 1월 1일 기준 실업자로 근무 가능자 - 2015년 2월 졸업예정자, 방송통신대·사이버대학교 재학생, 야간대학(원)생 지원 가능 - 휴학생의 경우 해당년도 말일까지 업무 가능한 자만 지원 가능 * 연도 중 결원 충원 시에는 채용예정일을 기준으로 함 3) 성범죄 사실이 없는 자 4) 전염성 질환이 없는 자
특화 분야	지역사회 복지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복지사 2급 이상 자격증 소지자로서 아동과 관련된 사회복지 업무 경력 1년 이상인 자
기 타	취업취약계층 우선선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저소득층(최저생계비150%이하), 6개월 이상 장기실업자, 여성가장, 고령자(만55세이상), 장애인, 북한이탈주민, 결혼이주자 ※ 채용 인원의 20% 이내
	기타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각종 자격증 소지자는 2015.2월 자격취득예정자 포함, 2015.2월 졸업 후 자격증이 수여되는 경우에는 졸업예정자 포함 • 주·야간대학생, 주간대학원생 참여불가 • 지역아동센터 대표자 참여불가 • 전일근무교사 경력 불가 • 친족 운영 센터(대표자 혹은 시설장)로는 배치 불가

3. 접수일정 및 제출서류

구 분	세 부 내 용	
채용공고	2014. 12. 16.(화) ~ 12. 22.(월)	
접수기간	2014. 12. 16(목) ~ 12. 22(월) / ※ 근무시간 내(09:00~18:00) 접수하며 중식시간(12:00~13:00) 제외	
접 수 처	정선군 주민생활지원과 드림스타트팀 (정선군여성회관 1층 사무실)	
접수방법	접수 기간 내 직접 방문 제출(우편접수 불가)	
면 접 일	2014. 12. 23.(화) / 서류심사 통과자 중 필요시 실시(개별연락 후 면접 실시)	
합격발표	2014. 12. 24.(수) / 홈페이지 게재 또는 개별 통보	
제출서류	기본 제출서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참여신청서(접수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 반명함판 사진 첨부) ※ 참여신청서는 서식에 맞추어 빠짐없이 기재하며 희망분야는 최대 3개까지 표기 가능(희망분야, 우선순위를 표기해야 선발 시 근무 조정 가능) - 자기소개서, 주민등록등본(접수일 기준 최근 3개월이내 발급된 것) - 자격증 사본, 경력증명서, 최종학력증명서 ※ 각종 자격취득예정자의 경우는 취득예정 사실 확인 가능한 서류를, 2015. 2월 졸업 후 자격증이 수여되는 자격의 경우는 졸업예정증명서를 제출
	채용 예정자 제출서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강진단서 : 채용직전 3개월 이내에 발급받은 「간염 포함 건강진단서」 (B형간염 보균자의 경우 교사로 활동해도 안전하다는 의사의 소견서 제출) -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경력 조회 동의서 ※ 채용예정자 제출 서류는 채용예정 발표 후 7일 이내 제출

4. 근무조건

구 분	교사분야	기본급	근무시간	보험가입	퇴직금
아동복지교사 (특화분야)	지역사회복지사	1,600,000원	주40시간 (주5일 / 1일 8시간)	사회보험전체	지급

※ 기본급은 각종 세금 및 사회보험료 본인 부담금 포함함

5. 기타사항

- 서류입증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으며, 제출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 제출서류에 허위가 있을 경우, 선정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응시원서나 각종 증명서의 기재사항 착오·누락 또는 연락불가로 발생하는 불이익은 응시자의 귀책사유로 합니다.
- 채용예정자의 경우 성범죄경력조회 및 건강진단 결과에 따라 채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채용기준은 상시 충족요건으로, 채용기준에 충족하지 못할 경우 채용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 최종합격자 외에 대기자를 선발하여 연도 중 결원 발생 시 재공고 없이 순위에 의거 차순위자를 우선 채용할 수 있습니다.
- 채용계획 및 일정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문 의 처 : 정선군 주민생활지원과 드림스타트팀(☎ 033-560-2973)

붙임 1 취업취약계층 확인 서류

1) 저소득층(최저생계비 150%이하)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 가구원수별 건강보험료 부과액(납입액) 한도('14년)

(단위: 원/월)

가구원수	소득기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1인	905,000	27,321	7,665	28,250
		29,111	8,167	30,100
2인	1,541,000	46,303	28,954	46,837
		49,330	30,850	49,905
3인	1,994,000	59,893	49,383	59,900
		63,816	52,618	63,823
4인	2,446,000	73,321	72,404	74,266
		78,124	77,146	79,130
5인	2,899,000	87,604	93,160	88,738
		93,342	99,262	94,550

2) 6개월 이상 장기실업자

- 고용센터, 지방자치단체 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고용촉진을 위한 사업을 위탁한 민간 취업알선기관에 구직을 신청한 날부터 기산하여 6개월 이상 실업상태에 있는 자
- 구직등록 여부 및 고용보험 가입 이력 조회
- 20~35세 청년으로서 최근 6개월 이내에 대학 등 교육기관 재학생이 아니고, 고용된 사업장에 대한 사실이 없으며 구직등록을 마친 자

3) 여성가장

구분	첨부서류	
배우자 無	- 가족관계등록부 - 부모가 근로능력 없음을 증명하는 서류(해당자에 한)	
배우자 有	가출·행방불명	실종신고서
	장애	장애인등록증, 국가유공자증명서, 장애급여지급통지서 중 1
	질병	의사의 진단서
	군복무	복무확인서
	학교 재학	재학증명서
	교도소 입소	수용증명서, 형 확정판결문
	구직등록 후 6개월 이상 실업상태에 있는 배우자	직업안정기관(고용센터) 또는 자치단체장의 확인서
	이혼소송제기	이혼소송확인서
기타 가족 생계 부양	통·반장의 확인서(검토)	

4) 고령자(만 55세 이상) : 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증 및 운전면허증 사본 등)

5) 장애인 : 장애인증명서, 복지카드, 상이군경회원증, 장애인단서(전문적)

6) 북한이탈주민 : 북한이탈주민 등록확인서

7) 결혼이주자

- 국적 취득 전 : 외국인등록증(F2 또는 F-5, F-6비자)
- 국적 취득 후 : 가족관계등록부의 혼인관계증명서

붙임 2 아동복지교사 신청서식

참 여 신 청 서						접수 번호
성 명			생년월일	년 월 일 (만 세)		
연 락 처(집)			휴대전화			
주 소						
e-mail						
해당여부	<input type="checkbox"/> 장애인		<input type="checkbox"/> 저소득층 (최저생계비 150%이하)			
	<input type="checkbox"/> 6개월 이상 장기실업자		<input type="checkbox"/> 여성가장 (가족부양 책임있는자)			
	<input type="checkbox"/> 고령자 (만 55세 이상)		<input type="checkbox"/> 북한이탈주민			
	<input type="checkbox"/> 결혼이주자					
아동복지교사 참여경력(해당자)	<input type="checkbox"/> 2007년 <input type="checkbox"/> 2008년 <input type="checkbox"/> 2009년 <input type="checkbox"/> 2010년 <input type="checkbox"/> 2011년 <input type="checkbox"/> 2012년 <input type="checkbox"/> 2013년 <input type="checkbox"/> 2014년		최근 실적기간 (2015 신규교사해당)		년 개월	
◆ 지원분야 : 지원 하고자 하는 교사 분야에 <input checked="" type="checkbox"/> 표를 하고(최대 3개), 희망 우선순위를 표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원분야의 근무 가능 시간대를 모두 <input checked="" type="checkbox"/> 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사분야		우선순위 (1~3순위)	근무유형 전일근무			
			(주25시간근무)		(주40시간근무)	
기본분야	이동지도 교사	초등			<input type="checkbox"/>	
		중등			<input type="checkbox"/>	
	기초영어교사				<input type="checkbox"/>	
	독서지도교사				<input type="checkbox"/>	
	예체능활동 교사	음악			<input type="checkbox"/>	
		미술			<input type="checkbox"/>	
체육				<input type="checkbox"/>		
특화분야	지역사회복지사			<input type="checkbox"/>		
◆ 학력사항(최종학력만 기재)						
기간		학교명		전공		졸업여부
◆ 자격 및 면허						
자격증 및 면허명		취득연월일		발행기관		비고
◆ 주요 경력사항						
기관명		기간		업무내용		비고
위 기재 사항은 사실과 틀림없습니다.						
		2014년 11월 일		성명		(인 또는 서명)
정선군수 귀하						
※ 증빙서류를 반드시 첨부해야 하며, 제출한 신청서류 및 증빙서류의 입증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음.						

자 기 소 개 서

자기소개
(성장배경/
성격)

지원동기

업무관련
사회경험
및
경력사항

업무수행계획
(포부/자세)

※ 2매 이내로 요약하여 작성바람.